

세법개론 2012년 4월 7일 국가직 인 책형

I 총평

2012년 4월 9급 문제는 비교적 평이하였다고 할 수 있고, 2011년 문제와 비교하면 난이도가 많이 떨어졌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공부를 정상적으로 한 수험생이라면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문제를 제외하고는 비교적 수월한 문제들이었다고 생각된다. 오랜만에 9급 수준의 문제가 출제되었다고 생각되고 한다. 올해는 세법은 쉬웠으나 상대적으로 회계가 어렵게 출제됨으로서 당황한 상태로 문제를 풀음으로서 세법도 실수가 많았던것은 아닌가 싶다.

II 출제경향

1. 조세총론과 국세기본법 -

- ① 납세자권리
- ② 국세기본법의 목적
- ③ 납세의무 성립
- ④ 서류송달

2. 국세징수법

- ① 징수순서
- ② 절대적 압류금지재산

3. 부가가치세법

- ① 사업자등록
- ② 용역공급
- ③ 과세표준
- ④ 총칙

4. 법인세법

- ① 익금
- ② 외국법인
- ③ 인건비
- ④ 부당행위계산부인

5. 소득세법

- ① 종합소득
- ② 소득금액
- ③ 양도소득
- ④ 총칙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 ① 증여세 과세대상
- ②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III 기출문제와 해설

1. 국세기본법

문1 국세기본법 - 납세자권리

국세기본법상 납세자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 갑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정보가 있는 경우 갑이 제출한 신고서를 진실한 것으로 추정할 수 없다.
- ② 납세자는 세무조사 시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으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 ③ 세무공무원은 조사대상 세목, 업종, 규모, 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기간이 최소한이 되도록 정하여야 하되, 거래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세무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④ 세무공무원은 납세자 을의 거래 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을의 같은 세목과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답> ④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은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있다.

※ 중복조사금지 :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

- ㉠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 ㉡ 부동산투기·매점매석·무자료거래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 ㉢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 ㉣ 2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 ㉤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에서 준용하는 경우 포함)에 따른 필요한 처분의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 ㉥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나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 ㉦ 세무조사시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재경정하는 경우

문2. 국세기본법 - 목적

국세기본법 제1조(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국세에 대한 기본적인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
- ㄴ. 위법 또는 부당한 국세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를 규정
- ㄷ. 국세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세 수입을 확보
- ㄹ.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으로 도모
- ㅁ. 국세에 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함

- ① ㄱ, ㄴ, ㄷ
- ② ㄱ, ㄴ, ㅁ
- ③ ㄱ, ㄷ, ㅁ
- ④ ㄴ, ㄷ, ㄹ

<답> ② ㄱ, ㄴ, ㅁ 「국세기본법」은 국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및 공통적인 사항과 위법 또는 부당한 국세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확실하게 하고, 과세의 공정을 도모하며,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국세기본법 제

1조).

- ㄷ. 국세징수법의 목적 : 이 법은 국세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세수입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국세징수법제1조)
- ㄹ. 소득세법의 목적 : 이 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소득세법제1조).

문3. 부가가치세법 -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상 사업자등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②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단위로 등록할 수 있다.
- ③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로 등록하려면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가 개시 20일 전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 ④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가 폐업하게 되는 경우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야한다.

<답>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부가가치세법제5조1항).

문4.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증여세과세대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증여세의 과세대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 ②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그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 ③ 증여세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형 및 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④ 영리법인이 재산으로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와 법인세가 모두 부과된다.

<답> ④ 수증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2에 따른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가 그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문5 소득세법 - 종합소득

소득세법상 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과 같은 위법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 ② 주식소각에 의하여 주주가 받는 금액 중 출자에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 ③ 종업원이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 중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 ④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은 분배소득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답> ④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은 배당금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문6. 법인세법 - 익금

법인세법상 익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그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익금으로 산입한다.

- ②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금액은 익금으로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③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매입가격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④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격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 중 법령이 정하는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답> ③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격으로 매입하는 경우 당해 매입가격과 시가와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

문7. 부가가치세법 - 용역의 공급

부가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업자가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 ②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 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가공만 하여 주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 ③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특수관계자가 아닌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 ④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답> ③ 사업자가 대가(對價)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 따라서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에게 용역을 무상공급시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문8. 부가가치세법 - 과세표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단,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않는다.)

- ①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 ②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 ③ 폐업하는 경우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그 재화의 시가
- ④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대가

<답> ④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격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따라서 그 대가가 아니다.

구 분	대가유형	과세표준
재화의 공급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용역의 공급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용역의 무상공급은 과세대상이 아니나,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 임대용역을 무상으로 공급시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문9. 소득세법 - 종합소득금액

소득세법상 소득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이자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② 근로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 ③ 연금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연금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④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답> ① 이자소득금액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문10. 법인세법 - 외국법인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의 과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장소 또는 이와 관련되는 감독활동 수행하는 장소를 포함한다.
- ② 외국법인의 국내에 있는 토지 등 양도소득 금액의 계산 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 거래가액으로 한다.
- ③ 외국법인이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저장이나 보관만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는 국내사업장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④ 외국법인이 국내에 있는 자산을 증여받아 생기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답> ④ 외국법인이 국내에 있는 자산을 증여받아 생기는 소득도 자산수증익으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문11. 국세징수법 - 징수순서

「국세징수법」상 체납액의 징수 순서로 옳은 것은?

- ① 체납처분비, 국세, 가산금
- ② 가산금, 체납처분비, 국세
- ③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 ④ 국세, 체납처분비, 가산금

<답> 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징수순위는 다음과 같다(국세징수법 제4조).

체납처분비 --> 국세 --> 가산금

문12. 소득세법 - 총칙

「소득세법」상 총칙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득세의 납세의무자(원천징수납부의무자 제외)는 거주자와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으로 구분한다.
- ② 거주자의 종합소득에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받는 일시금액을 포함한다.
- ③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④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하되,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로 한다.

<답> ②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소득세법제22조제1항)
따라서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받는 일시금액은 종합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1.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 중 일시금
- 2. 각종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 3. 퇴직함으로써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직보험금 중 일시금
- 4.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반환일시금 또는 사망일시금
- 5.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금

문13. 부가가치세법 - 총칙

「부가가치세법」상 총칙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용역의 수입에 대하여 과세한다.
- ② 재화란 재산가치의 유무와 관계없이 유체물과 무체물을 포함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한다.

<답> ④

- ① 용역의 수입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 ② 재화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 ③ 국가 등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문 14. 국세기본법 - 서류송달

「국세기본법」상 서류의 송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서류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내용을 관보에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서류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 ② 전자송달은 당사자가 그 방법을 신청한 경우에만 적법한 송달방법이 된다.
- ③ 전자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서 직접 출력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④ 세무공무원이 고지서를 적법한 송달장소에서 교부송달을 시도하였는데 납세자가 부재중이었고, 대신 사리를 판별할 능력이 있는 종업원을 발견하여 송달을 시도하였으나, 그 종업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송달장소에 고지서를 두고 와도 적법한 송달이 된다.

<답> ③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국세기본법 제12조 제1항 단서).

문 15. 국세징수법 - 절대적 압류금지재산

「국세징수법」상 절대적 압류금지재산이 아닌 것은?

- ① 사업에 필요한 기계·기구와 비품
- ②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생활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의복
- ③ 직무상 필요한 제복
- ④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학업에 필요한 서적과 기구

<답> ① 사업에 필요한 기계·기구와 비품은 조건부 압류금지 재산이지 절대적 압류금지 재산이 아니다.

<조건부 압류금지재산> 다음의 재산은 그 체납자가 체납액에 충당할 만한 다른 재산을 제공할 때에는 이를 압류할 수 없다(국세징수법 제32조).

- ㉠ 농업에 필요한 기계·기구·가축류의 사료, 종자와 비료
- ㉡ 어업에 필요한 어망(漁網)·어구(漁具)와 어선
- ㉢ 직업 또는 사업에 필요한 기계·기구와 비품

문 16.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신주인수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이다.
- ② 전세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다.
- ③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다.
-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

할 수 있다.

<답> ③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이지 과세대상이 아니다.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소득세법제89조제1항)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문17. 법인세법 - 인건비

「법인세법」상 인건비의 손금산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② 비상근임원에게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에 따라 지급하는 보수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③ 임원에 대한 상여금의 지급이 정관·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결정된 급여지급규정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④ 법인의 해산에 의하여 퇴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해산수당은 최종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답> ② 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소득세법제43조제4항)

- ④ 소득세법제43조제5항

문18. 국세기본법 - 납세의무 성립

「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자의 성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해산을 포함한다) 또는 합병을 하는 때에 성립한다. ② 가산세는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성립한다.
- ③ 금융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는 해당 금융업자의 법인세 납세의무가 확정하는 때에 성립한다.
- ④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성립한다.

<답> ③ 교육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다음과 같다(국세기본법제21조제1항)

가. 국세에 부과되는 교육세: 해당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나.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19. 법인세법 - 부당행위계산부인

「법인세법」상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 ②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 ③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
- ④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한 경우

<답> ④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는 부당행위부인대상이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법인세법시행령제88조제6호).

가. 제20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나.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문20.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증여세와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해 주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보험금의 증여
- ②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 ③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
- ④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답> ①

<증여자와 수증자간 연대납세의무>

구 분	내 용
연대납세의무관계	증여자와 수증자 간
연대납세의무사유	조세채권확보가 곤란한 경우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항상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경우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경우 •조세채권확보가 곤란한 경우
연대납부한 세액처리	증여자가 연대납부한 증여세는 또 다른 증여재산으로 보지 않는다.
연대납세의무가 없는 경우	1. 토지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 제37조) 2. 합병·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 제38·39조)
	3.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 제39조의2) 4.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 제39조의3) 5.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 제40조) 6.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상증법 제41조) 7.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 제41조의3) 8. 금전무상대부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 제41조의4) 9.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상증법 제41조의5) 10. 그 밖의 이익의 증여(상증법 제42조) 11.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상증법 제45조의3) 12. 저가양도, 고가양수시 이익의 증여(상증법제35조) 13. 채무면제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제36조) 14.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이익의 증여(상증법48조)